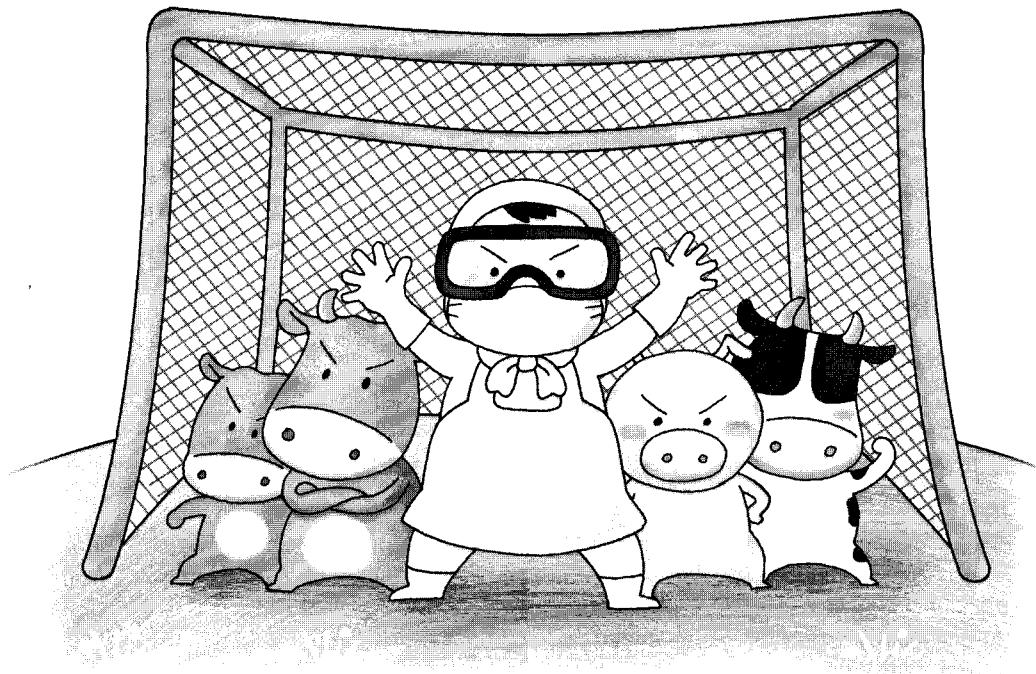


구제역 예방 요령 안내



〈축산관련 종사자의 목장출입 금지 및 접촉 자제 요청〉

현재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역학조사 결과 축산관련 종사자의 목장출입 및 접촉이 주요 원인의 하나로 추정되고 있는 바, 회원농가들께서는 다음 사항을 참조하시어 목장 내 축산관련 차량 및 종사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최대한 접촉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 가. 사료, 톱밥 및 동물약품 운반차량(기사)
- 목장내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구앞 별도 장소에서 농가의 자체 차량 등에 적재한 후 농장내로 운반(차량기사와 접촉 금지)
- 나. 수의사, 인공수정사, 거세 관련 실사자, 사료영

업자 등 축산관련 종사자

- 목장 방문을 당분간 금지 조치
- 부득이한 경우에만 허용하되, 1회용 방역복·장화·장갑착용 등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고, 농장 출입 전·후 각 1회이상 소독 실시
- 방역복은 현장에서 폐기

〈구제역 예방접종 농장주 주의사항 및 이동·출하 안내〉

- ◇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접종 이전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농장소독, 외부인·차량 통제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도 이미 감염되었거나 면역력이 형성(2주)되기 전에는 감염될

• 구제역정보 •

- 가능성이 있고,
- 돼지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방역을 계속 철저히 해야 합니다.
- ◇ 구제역 백신은 바이러스를 죽여서 만든 백신(사독)이므로 가축에 접종하더라도 안전하며 부작용이 없습니다.
- 바이러스가 가축 체내에 잔류하지 않기 때문에 도축 후 식용으로 공급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 다만, 예방접종에 의해 주사부위에 염증(화농)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접종부위 소독이 필요합니다.

1. 예방접종 후 가축 관리

- ◇ 예방접종에 따른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가축에 대해 주의깊게 관찰하고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접종부위를 소독해야 합니다.
- ◇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양질의 사료, 깨끗한 물을 공급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축사를 깨끗이 청소하는 등 환경관리 철저
- ◇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는지 매일 관찰해야 합니다.
- ◇ 혀·잇몸·발굽·유두에 수포 여부, 침흘림, 유량감소, 발열 등 확인
※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도 가축위생시험소나 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
(☎ 1588-9060, 검역원 : 031-467-4365~8)

- ◇ 매일 축사 내·외부 및 기구 소독, 외부인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농장주간 불필요한 모임, 행사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방접종 후 이동·출하

- ◇ 예방접종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경계지역(발생농장 반경 3km~10km 이내)
 - 1차 접종이 완료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 임상검사 및 혈청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날
 - ② 위험지역(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
 - 경계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날
- ◇ 예방접종 가축에 대한 수매 및 출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이동제한 기간 중 수매(지정도축장 출하)
 - 해당지역의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없는 경우에 허용
 - ② 이동제한 해제 후 도축장 출하 또는 매매(이동)
 - 농가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구제역 검사를 신청하고, 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구제역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출하(이동)

[농식품부] 구제역관련 가축거래 규제조치 개선사항

1. 생축의 도간(특별시·광역시는 도에 포함) 이동 출하를 허용하되, 사전에 지역 농·축협으로부터 출하증명서를 발급받아 출하
 - 출하증명서 발급기관 : 지역 농·축협(품목조합 등)
 - 출하증명서 발급기준 : 도간 이동시에만 발급
 - 출하증명서 신청방법 : 도간 이동 출하대상 농가가 지역 농·축협 등에 사전전화 등을 통해 신청하고 협의하여 출하
2. 농가간 또는 유통상인(소상인)을 통한 가축거래 전면중단 및 위반농가 등 조치(정책자금 지원제외)는 기존 조치사항과 동일함

구제역 관련 피해농가 지원내용

구분	항목	지원대책
살처분지역	살처분보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처분 농가에게 해당 가축시세의 100% 지급 * 젖소는 5개월분 유대 추가보상(생계안정자금과 택일) * 고농력우 보상(최근 3개월의 검정성적 중 높은 성적이 전년도 305일 검정성적 상회 50%의 평균 이상인 젖소
	생계안정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평균 가계비의 6개월치, 최대 1,4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처분 마리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차등 지원 * 젖소는 유대보상과 택일
	가축입식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가별 살처분보상금 한도 내에서 입식자금 지원(융자 100%) - 연리 3%,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가축입식 후 증빙서(구매영수증) 제출 * 유대보상을 택한 젖소는 두당 지원한도를 육성우(수정전단계)로 함
이동제한지역 (10km)	경영안정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제한지역 내 농가, 도축·가공장 등 경영자금 지원(융자 100%) - 농가 : 최고 5천만원 이내 지원, 경영비와 이동제한기간 고려 산정 - 도축장 : 1일 평균 도축두수×(폐쇄 및 영업정상화 기간)× 도축수수료 - 사료공장 : 1일 사료생산실적(구제역 직전 1개월 평균)×(폐쇄 및 영업정상화 × 기간)사료판매가격 * 연리 3%,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수매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제한지역 내 가축 수매 지원(젖소 4세, 육우 15개월령 이상)
기타 지원방안	정책자금 상황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축산경영자금 및 축산발전기금, 농협 자체 지원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제한조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 도래하는 원금에 대하여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 사료구매자금이차보전 상환기간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 도래되는 원금에 대하여 1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학자금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농가 자녀(중·고교생)의 학자금 면제(교과부)
	소득세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등 일부 세액 공제 및 납부기한 연장(국세청)
	농신보 보증 한도 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농가에 대해 동일인당 보증한도(10억원) 내에서 기보증 대출금 외에 추가 3억원까지 신용보증 지원

· 위험지역내(3km) 원유 폐기 자금 지원

**참고. 젖소 살처분보상금 평가액 상한선
(농식품부 고시 : 살처분 가축 보상금 등 지급요령 中)**

구분	상한가격
유사산 태아	초유떼기 가격 × 유사산 발생 당시 임신 개월수 / 10.25 개월
초유떼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분유떼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수정단계(임신 2개월까지)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초임단계(임신 3~8개월까지)	초임만삭 가격의 80%
초임만삭(임신 9개월 이상)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초산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초산우(임신만삭)	초산우 가격 + 태아 가격
초산우(임신 3~8개월까지)	초산우 가격 + 태아 가격
2산우	초산우 가격의 90%
2산우(임신만삭)	2산우 가격 + 태아 가격
2산우(임신 3~8개월까지)	2산우 가격 + 태아 가격
다산우(임신만삭)	다산우 가격 + 태아 가격
다산우(임신 3~8개월까지)	다산우 가격 + 태아 가격
다산우(3~5산)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노산우(6산이상)	노폐우 가격 (농협조사) + (다산우 - 노폐우) / 2
고능력우	일반 젖소 가격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 [(평균 초과산유량) × (농가별 유대 - 생산비)] × 이용잔여년수의 1/2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고능력우	일반 젖소 가격 (농협조사 산지가격 기준) + [평균 초과산유량 × (농가별 유대 - 생산비)] × 이용잔여년수 × 조정계수 (0.09)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젖소의 우유생산 가치	[사육농가별 일(日) 평균 유대 손실분 × 입식제한기간 × 조정계수 (0.99)]

* 밑줄 친 부분은 지난 8월 변경된 사항으로 현재 적용 중에 있으며, 고시상에서는 작구 수정이 안 된 상황임

〈비고〉젖소의 보상가격 산정기준 및 방법

가. 분유떼기~수정단계(임신2개월까지)

수정단계(임신2개월까지) 가격과 분유떼기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 단위로 산정 다만, 분유떼기 월령은 2개월, 수정단계는 14개월을 표준 월령으로 하여 가격 산정

나. 고능력우

- 인정기준: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하고 농협젖소개량사업소에서 실시하는 유우군 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가축사육시설의 젖소로서, 최근 3개월의 검정성적 중 높은 성적이 전년도 305일(착유일) 검정성적 상위 50%의 평균 이상인 젖소
- 평균 초과산유량: 해당 개체의 전년도 1년간 총 산유량에서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국 젖소 두당 연간 평균 산유량을 뺀 유량
- 농가별 유대: 평가대상 젖소사육 농장의 최근 1년간 평균 ℓ 당 유대(집유업체 증명)
- 생산비 :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유(ℓ 당) 평균 생산비
- 이용잔여년수 : 전년도 유우군 검정사업 참여우 도태자료의 유량수준 상위 50%의 평균도태월령에서 살처분 당시의 월령을 공제하되 농가단위 유대손실분을 보상받는 경우는 입식제한기간을 추가 공제
- 조정계수: 0.99(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입식제한기간만료일까지의 이자발생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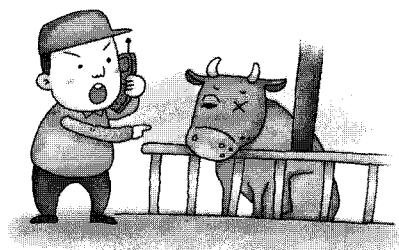
- 평가방법: 고능력우에 대한 보상금을 평가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해당 개체에 대한 보상금액을 농협젖소개량사업소에 의뢰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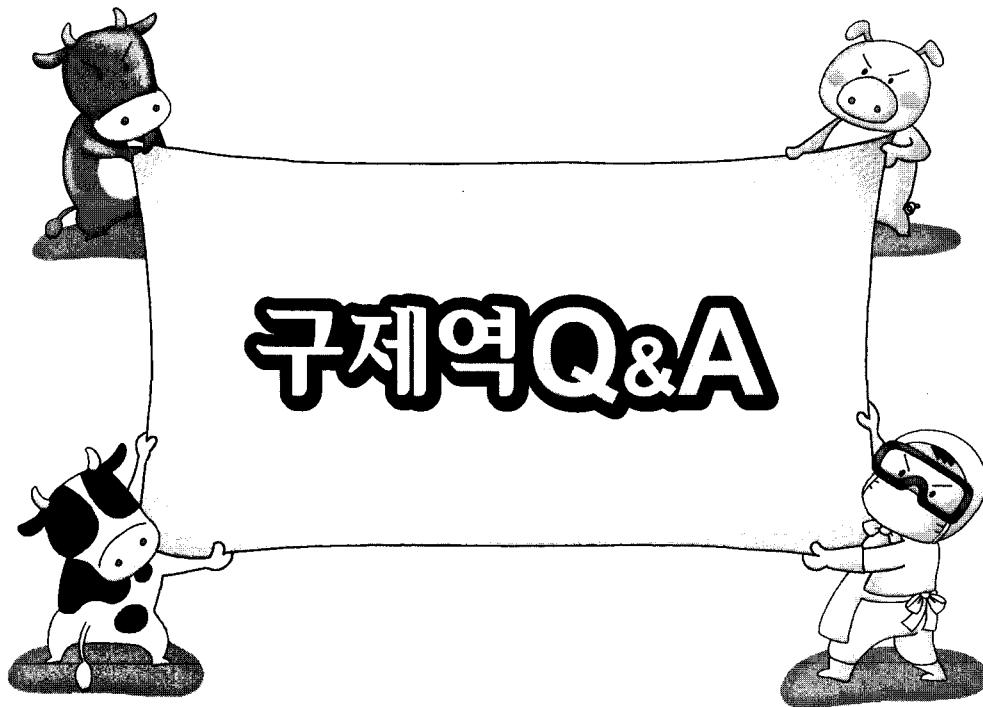
다. 구제역 발생으로 살처분하는 젖소의 우유생산 가치

- 사육농가별 일(日) 평균 유대손실분: 【해당 젖소 사육농장에서 원유를 집유한 유업체가 증명한 평가대상 젖소사육 농장의 최근 1년간 일 평균 납유량(ℓ) × [(평가대상 젖소 사육 농장의 최근 1년간 평균 ℓ 당 유대(집유업체 증명) -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유(ℓ 당) 평균 생산비)]】
- 입식제한기간 : 실제 입식제한 기간에서 준비기간을 가산하여 180일
- 조정계수: 0.99(보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입식제한기간만료일까지의 이자발생분)
- 지급기준: 젖소 사육 농가가 생계안정비용 지원 대신 유대손실분 보상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한다.

※ 소각 또는 매몰한 물건 또는 생산물

○ 보상금평가반에서 처분당시의 시세를 감안하여 상한가격을 정한다.





Q 구제역 예방접종을 한 가축의 고기를 먹어도 안전한가요?

A 구제역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습니다. 구제역은 발굽이 둘로 갈라진 소와 돼지 등의 동물들만 걸리는 질병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닙니다.

아울러, 구제역 백신은 바이러스를 죽인 백신(사독백신)이므로 가축에게 접종하더라도 몸 안에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Q 그동안 매몰처분을 하다가 지금 구제역 백신을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매몰처리 비용과 비교해 예상 소요액은 얼마인가요?

A 과거 영국, 일본, 우리나라가 해 온 방역대로 매몰처분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초기에 이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3개 시도로 확산됨에 따라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하고 이미 상실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가축방역 협의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지역에 한해 제한적 예방접종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올해 일본의 경우 '10.4월 미야자키현에서 구제역이 빠른 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제한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성공적으로 구제역을 근절했습니다.

매몰처분에 따른 직접적인 비용은 '10.11~12월에 발생한 경북, 경기, 강원지역의 경우 약 400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한적인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 10만 마리당 연간 6억원 내외(2회 접종시 12억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Q 구제역 예방접종이 오히려 구제역을 더욱 확산시켜 축산업 기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던데, 이에 대한 대책은?

A 구제역 예방접종은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하고, 이미 상실한 청정국 지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한다는 목표달성을 위한 비상 대책입니다. 현재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은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축산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 구제역 예방접종을 도입한 후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얼마나가요?

A 구제역 예방접종으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예방접종 여부와는 상관 없이 청정국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구제역이 발생한 지난 11월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예방접종의 목표는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해 이미 상실한 청정국 지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제한적 예방접종을 하면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일이 지금까지의 방식인 매몰처분 방식보다 다소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제한적 예방접종을 통해 확산을 막으면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후 6개월 후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생깁니다.

Q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면 수출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A 지난해 쇠고기 수출액은 미화 37만 달러(약 4억원)이고, 돼지고기 수출액은 159만 달러(약 18억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구제역 예방접종을 해서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할 수도 있으며, 설사 예방접종으로 인해 청정국 지위 회복이 3개월 정도 늦어지더라도 소고기

및 돼지고기 등의 수출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미미할 것입니다.

Q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면, 그동안 수입이 금지됐던 중국산이나 베트남산 등 값이 싼 고기의 수입을 막을 수 없다던데, 사실인가요?

A 국가간의 축산물 교역은 구제역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위생실태 등 다른 질병의 발생 상황에 따라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선진국의 경우에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다고 하고, 예방접종을 했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다고 하던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A 대만의 경우 1997년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으로 예방접종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1년 까지 발생되었으나 그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2004년에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에 재발되어 현재까지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향후 국내 예방접종 가축에 대해 '쇠고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철저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모든 예방접종 소에 대해 자연감염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자연감염으로 인해 항체가 형성된 소에 대해서는 매몰처분해 전염원(Carrier)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Q 왜 소만 예방접종을 하는 것인가요?

A 소의 경우 돼지보다 더 잘 감염되고 백신효과가 우수하며, '쇠고기 이력관리 시스템'

을 통해 접종 개체의 사후관리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소에 한해 우선 실시하는 것입니다.

Q 예방접종을 하면 소독 등 방역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철저한 차단방역이 필요합니다. 예방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기 전(2주 소요)에는 감염이 가능하고, 돼지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제역 발생시의 소독 및 외부인 차량 통제 등 차단방역이 필요합니다. 정부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발생지역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351억원을 지원할 것입니다.

Q 예방접종을 한 후 매몰처분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인지요?

A 예방접종을 한 소는 사전 정밀검사 후 구제역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축산농가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도축이나 매매시에는 구제역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는 것만 유통시킵니다. 자연 감염되어 항체가 생

긴 것인지, 아니면 예방접종에 의해 항체가 생긴 것인지는 과학적으로 구별이 가능하므로 예방접종으로 인해 항체가 형성된 것만 출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제역은 사람에게 전염되어 질병이 아닙니다. 또한 도축을 하기 전에 구제역 검사를 실시해 감염되지 않은 고기만 시중에 유통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Q 예방접종 지역 내에서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하게 되나요?

A 예방접종 지역 내에서 구제역이 발생될 경우 아래와 같은 방역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① 예방접종 중 지역 내(10km)에서 구제역 발생시 발생농가 중심으로 반경 500m내의 우제류 동물에 대해 매몰처분함.
- ② 예방접종이 완료된 후 구제역 검사결과 자연감염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발생농가만 매몰처분함.
- ③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 지역 내에 고위험군 농가가 있을 경우 해당농가 우제류 동물에 대하여 매몰처분함.

예방접종 지역 이외의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기존의 방역조치대로 발생농가 중심으로 반경 500m 또는 3km 내의 우제류 동물에 대하여 매몰처분을 실시합니다. ☺

